

11.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15호 1997. 8. 25

주요 골자

- 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이 기술인력의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1주이상 또는 2주이상으로 정하여져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의 교육훈련은 2주이상 받도록 하되, 그 다음부터는 등급 및 경력에 따라 교육훈련기간을 1주이상 또는 1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제3조제1항).
- 나. 품질보증계획은 구매, 공정관리, 검사 및 시험, 부적합품의 관리와 내부품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함(제15조의 3).
- 다.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인증은 공장면적·종업원수등 공장규모, 관리기술자·기능인 등 기술인력, 공작설비기기·용접설비기기·크레인·시험검사설비 등 시설·설비와 제작기술·품질관리·작업환경 등 품질관리상태에 의하여 부여하도록 함(제25조의 2 및 별표 15).
- 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자의 능력, 용역수행실적, 신용도와 기술개발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화의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함(별표 5).
- 마. 품질관리비에 품질시험비만 계상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품질시험부대비용·품질보증계획서작성비·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별표 13).

개 정 이 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화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건설 기술용역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며, 품질관리비에 품질시험비외에 품질시험부대비용·품질보증계획서작성비·교육훈련비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등급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 및 동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취득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 2주 이상
2. 기술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14시간 이상
3.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은 후 10년이상 건설공사 업

무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14시간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1주 이상

② 건설기술자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내에 감리원교육훈련을 받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교육훈련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교육은 그 건설기술자교육 훈련으로 이를 대체하며, 감리원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받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감리원교육훈련을 받은 날부터 3년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교육훈련은 그 감리원교육훈련으로 이를 대체한다.

제4조의 제목중 “지정요건등”을 “지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종류 및 등급별”을 “훈련과정별”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건설감리협회”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감리원인 경우에는 건설감리협회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으로 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또는 단체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제4조의 2 제1항 중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를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 기술자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건설기술자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를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에”로 하며, 동조제6항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기술경력증을”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

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내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경력증발급 현황을 입력한 자기 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의 3(사용자의 보고의무) ① 건설 관련업체는 법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자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축사사무소인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내용을 입력한 자기디스켓 및 이를 출력한 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과”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으로 한다.

제9조중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일반건설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간”을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및 검토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2인 또는 3인을 선정한다.”를 “5인 내지 7인을 선정할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5인 내지 7인을 선정할 것. 다만, 평가기준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상 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 나.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5인 또는 7인을 선정한 후 이들 중에서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제안서평가결과에 따라 2인 또는 3인을 선정할 것.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나. 용역비가 10억원이상인 실시설계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이 계약 또는 준공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일 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발주청은”을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로 한다.

제13조의3제1호중 “기술제안서”를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예정가격이내”를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하고, 동조제3호중 “책임감리의 경우에는”을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로, “3인의 업체를”을 “5인 내지 7인을”로, “예정가격이내”를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한다.

제13조의4 본문중 “건설교통부령으로”를 “건설교통부령이”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조계산서(당초 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의5제1항제5호중 “공사”를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중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총괄표 및 부실벌점적용결과”를 “그결과”로 한다.

②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의 벌점부과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제1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0(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8조의 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설계등의 심의제외공사) 영 제39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건설공사
2. 준설공사

제14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

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

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각종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할 것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1항중 “공사의 특별시방서”를 “공사시방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특별시방서”를 “공사시방서”로 한다.

제4장에 제14조의6 및 제1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표준화위원회의 회의) ①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7(소위원회) ① 영 제39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소위원회는 표준화위원회의 위원 5인이

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당해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작업반 및 전문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6의 규정은 표준화위원회의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중 “품질시험”을 “품질관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품질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41조제1항 단서”를 “영 제41조제1항 본문 단서”로, “건설교통부령으로”를 “건설교통부령이”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을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의3(품질보증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문서 및 자료관리
2. 구매
3. 고객지급품의 관리
4. 제품식별 및 추적성
5. 공정관리
6. 검사 및 시험
7.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8. 검사 및 시험상태
9. 부적합품의 관리
10. 시정 및 예방조치
11.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12. 품질기록의 관리
13. 내부품질검사
14. 훈련
15. 서비스
16. 통계적 기법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
 질보증계획은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
 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
 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

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
 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중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시험·검사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
 시) ① 법 제24조제2항, 법 제24조의2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시
 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
 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
 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
 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
 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품질시험성과관리 등)”을“(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품질시험대행기관”을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품질시험”을 “품질시험 및 검사”로 한다.

①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품질시험”을 각각 “품질관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품질시험”을 “품질관리”로, “별표 14의 품질시험적정성 확인점검요령”을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46조의2제1항”을 “영 제46조의4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4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영 제4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안전관리비)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2.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 4.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은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정기안전점검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토목·건축 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 본문중 “건설교통부령으로”를 “건설교통부령이”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근
2. 에이치(H)형강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공장인증 등) ① 영 제4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2. 공장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격증 사본
3. 공장규모 및 설비현황
4. 기타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영 제4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며,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③ 국립건설시험소장은 영 제47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장인증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4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의 제목중 “품질시험”을 “품질시험 및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은”으로, “품질시험대행”을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으로, “동 시험대행의뢰를 위하여”를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품질시험”을 각각 “품질시험 및 검사”로, “시험이”를 “품질시험 및 검사”로, “품질시험성과표”를 “품질시험·검사성과표”로 한다.

①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품질시험대행실적제출)”을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로 하고, 동조중 “품질시험대행실적”을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품질시험대행자”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사무실 및 실험실”을 “시험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품질시험대행지정신청인이 영 제49조제2항의”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49조제1항의”로, “품질시험실시대행자 지정대장”을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대장”으로, “품질시험대행자지정증”을 “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49조제3항”을 “영 제49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중 “품질시험대행자지정”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4.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지정분야를 증명하는 서류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9조제5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이라 함은 영 제49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동으로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범위안에서의 변동을 말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1의2. 준설공사

1의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1의4. 굴토·정지 등 단순토공사

제36조제1항제3호중 “제29조”를 “법 제29조”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라. 별지 제5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

제37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감리원수첩”을 “감리원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리원관리원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감리원관리원부에 의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감리원수첩”을 “감리원증”으로, “감리원수첩교부신청서”를 “감리원증교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리원수첩교부신청”을 “감리원증교부신청”으로, “감리원수첩”을 “감리원증”으로, “감리원수첩발급대장”을 “감리원증발급대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감리원수첩”을 각각 “감리원증”으로, “감리원수첩재교부신청서”를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감리원수첩”을 “감리원증”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4호 서식의 감리전문회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장비명세서 등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국토관리청장(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설감리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장비의 증감을 말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감리전문회사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감리전문회사휴업·폐업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감리일지의 보고)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의 보고는 책임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일지를 대상으로 15일마다 행한다. 다만, 공사 중지기간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감리협회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감리일지를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감리일지를 열람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 설계 및 시공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중 “준공된 때”를 “90퍼

센트이상 진척된 때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사의 시공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시 실시하는 시공평가결과에”를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결과에”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공평가의 결과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별로 평가한 평점합계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건설폐자재의 재활용율을 20퍼센트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점을 가산한다.

⑤ 영 제57조제1항제2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공종반복공사를 말한다.

⑥ 발주청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를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1호중 “최근 3년간 준공한 공사”를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공사”로 하고, 동항제2호중 “최근 3년 이내에”를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발주청에서”로, “건설업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및 제7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별점을 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당해 발주청의 누계부실별점에 따라 다음 각목의 점수를 평균점수에서 감산할 것

<u>누계부실별점</u>	<u>감산점수</u>
3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7.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평균 점수에 가산할 것

<u>인증단계</u>	<u>가산점수</u>
KS A 9001 또는 9002	1.0
KS A 9003	0.5
KS A 14001	0.2

8. 시공능력평가대상인 업체가 당해 연도에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건수가 1건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하고, 계약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매 공사건수마다 0.2점씩 평균점수에 가산할 것. 이 경우 가산점은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9. 발주청은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점수외에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상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2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것.

제47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7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할 것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1.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평점의

평균이 90점 이상이고 시공능력 평가대상 건설업자의 20퍼센트이내의 범위에 들 것. 다만,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수가 15개미만인 경우 3개 업체까지 선정할 수 있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수수료) 법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건설교통부령 제34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중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를 “199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를 삭제한다.

별표 15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내지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내지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8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내지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외국인감리원의 경우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14조의2제1항·제3항제2호·동항제3호 및 제14조의4와 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제40조의4제1항 및 별표 19(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③ (수수료규정의 적용례) 수수료산출기준에 별표 19의 개정규정(품질검사전문기관지정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